

<p>더이상 質疑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이상으로 서울特別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議案動議의 件은 金錫浩委員이 提案說明하신 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 <p>안 제5조(구성)의 제2항중 “부시장”을 “주택국장”으로 한다.</p> <p>안 제6조(기능) 제1호의 조례정비에 관한 사항을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5호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을 “11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비주거용건축물(주거용건축물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심의”로 하고, 제6호 “11층상이거나 300세대이상인 공동주택의 경관심의” 및 제7호 “기타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구역내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신설한다.</p> <p>안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등)의 제1항 중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등”을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등”으로 한다.</p> <p>안 제15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의 제1항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이상 접하여야 하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이상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곳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p>	<p>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이상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곳이상”으로 하며, 제2항에 “다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장용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한다.</p> <p>안 제16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4호 단서중 “구청장이 도시 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로 한다.</p> <p>안 제1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6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로서 너비 6미터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제9호 단서중 “정부와 농·축·수협에서 운영하는 창고와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창고”를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창고”로 하고, 제12호 “동물관련 시설(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간이도제장에 한한다)”을 신설한다.</p> <p>안 제23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를 삭제한다.</p> <p>안 제24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를 삭제한다.</p> <p>안 제26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5호에 “종교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로서 2층이하인 경우에 한한다)”과 제12호에 “의료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로서 2층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을 신설한다.</p> <p>안 제29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제27조로 하고 제8호 “전용공업지역: 100분의 60”과 제9호 “일반공업지역: 100분의 60”을 삭제하며 제10호 내지 제14호를 제8호 내지 12호로 한다.</p>
--	--

안 제31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을 제28조로 하고 제8호를 삭제하며 제9호 내지 제13호를 제8호 내지 12호로 한다.

안 제31조(높이제한 완화구역)를 제29조로 하고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하는 건축물 각부분의 높이는 그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배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를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로 하고, 제1호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폐율을 10분의 4이하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3배이하”로 하고, 제2호는 “대지둘레의 2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에 모든 건축선(막다른 도로 및 폭 4미터이하인 통과도로에 면한 건축선을 제외한다)으로부터 각각 6미터이상 후퇴하여 건축물(지표면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5배이하”로 하며,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로 한다.

안 제32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를 제30조로 하고 제1호 가목중 “4미터초과하는 부분은 2미터이상”을 4미터초과하는 부분은 각부분 높이의 4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호 가목중 “수평거리의 2배이하”를 “수평거리의 2배이하로 하되, 도로에 접한 부분에서는 도로중심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이하”로 하며, 제2호 나목 “주거용 건축물과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거용 부분이 연면적의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를 “주거용 건축물과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안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의 제2항제3호 중 “조경·벤치·파고라·미술장식품·시계탑·분수등”를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등”으로 한다.

부칙

안 제5조(건폐율·용적율에 대한 적용의 특례)의 “제29조 및 제30조”를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안 제6조(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다세대주택의 높이제한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제30조제2호 가목의 규정중 다세대주택에 대하여는 1993. 5.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안 제7조(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건축법 개정(’91.5.31. 법률제4381호)에 따라 종전에 서울특별시조례에서 정한 사항중 자치구조례에서 정할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구조례가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한다.

안 제6조 및 제7조를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委員長 禹炅仙 지금까지 會議進行에 협조하여 주신 委員 여러분 및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58分 散會)

○出席委員

禹炅仙	金禹仲	李載鎬
金錫浩	金東洙	權寧斌
金洙福	洪濠棟	

○專門委員

宋在(在) 70

○出席公務員

住宅局長 梁甲